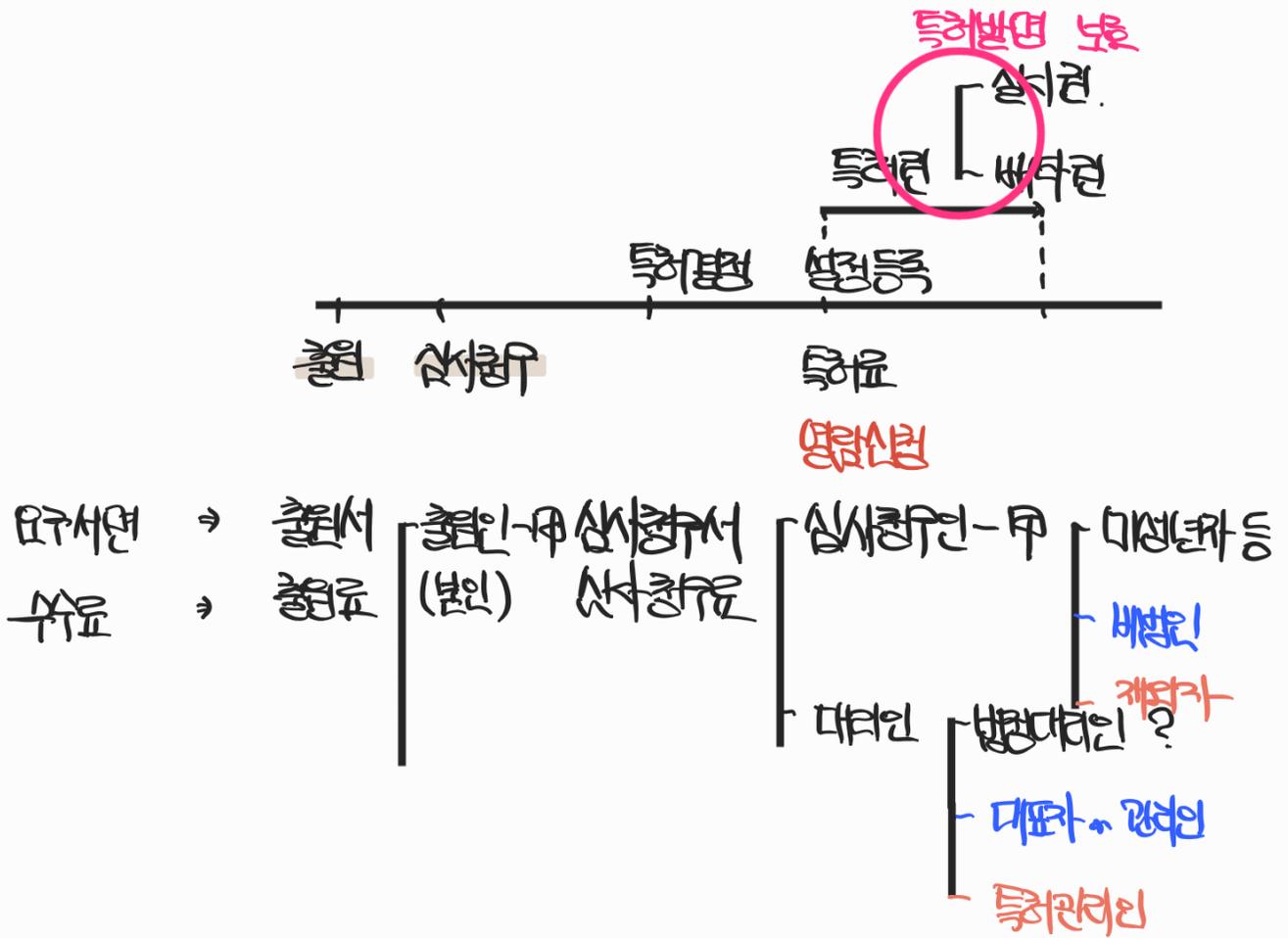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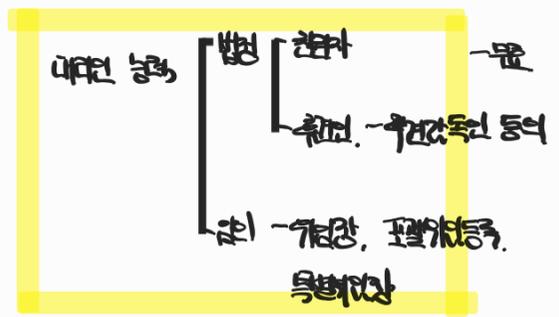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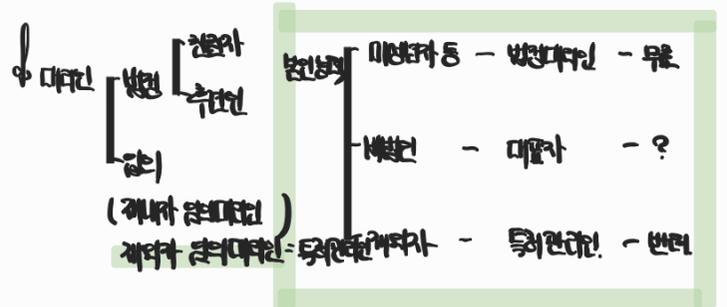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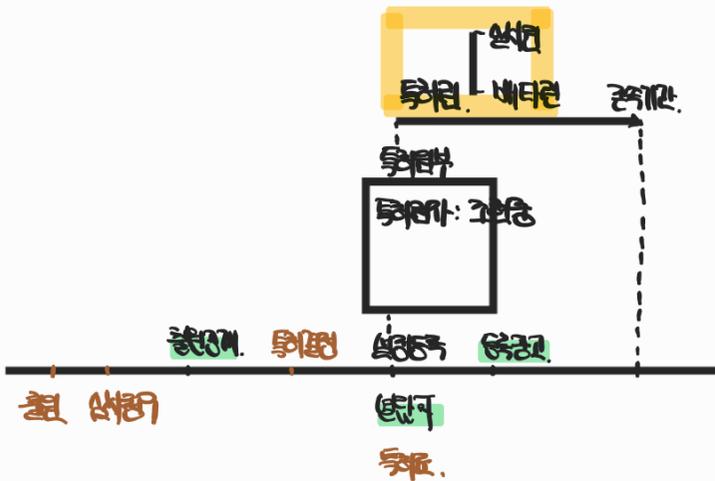


PART 02. 절차 총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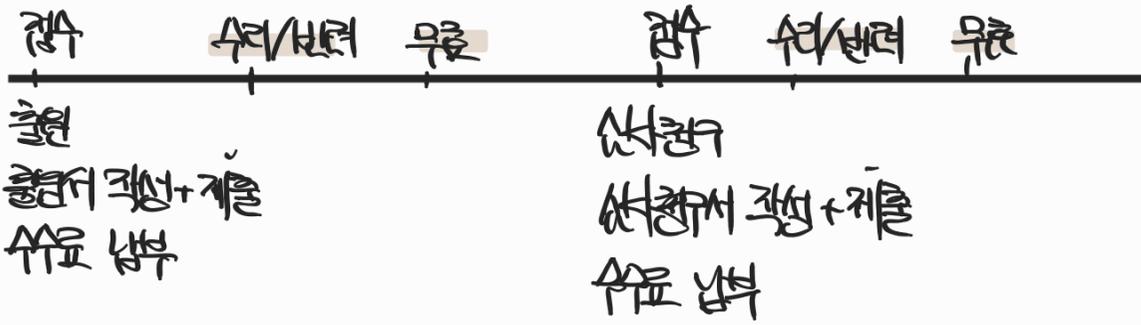
쪽지시험 1회차 제1조~82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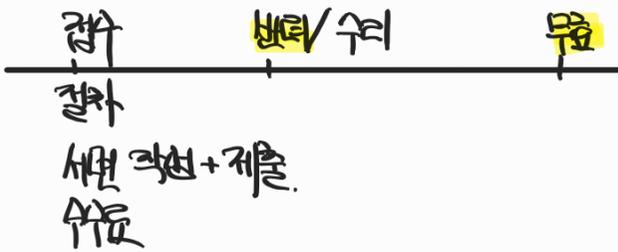
기본서 p.4, 5,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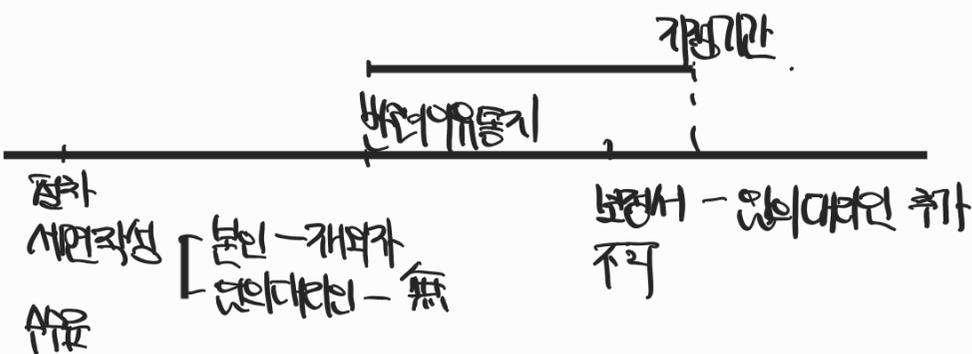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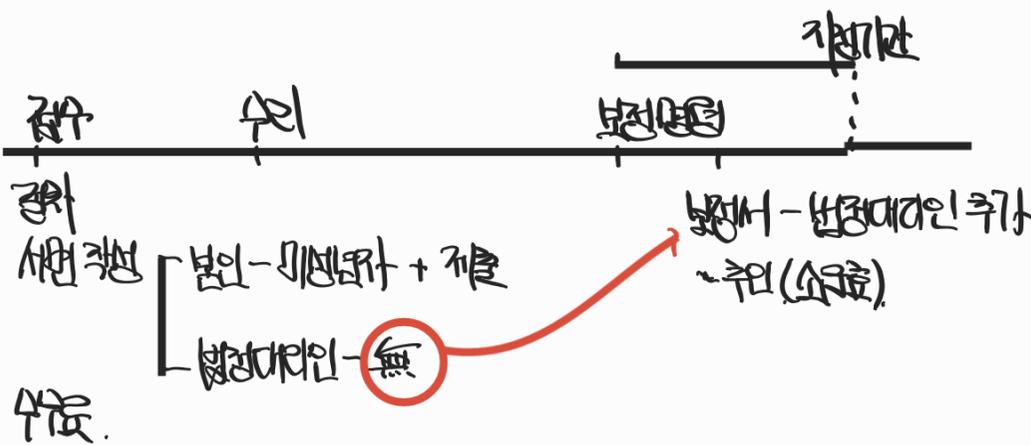
쪽지시험 1회차 제3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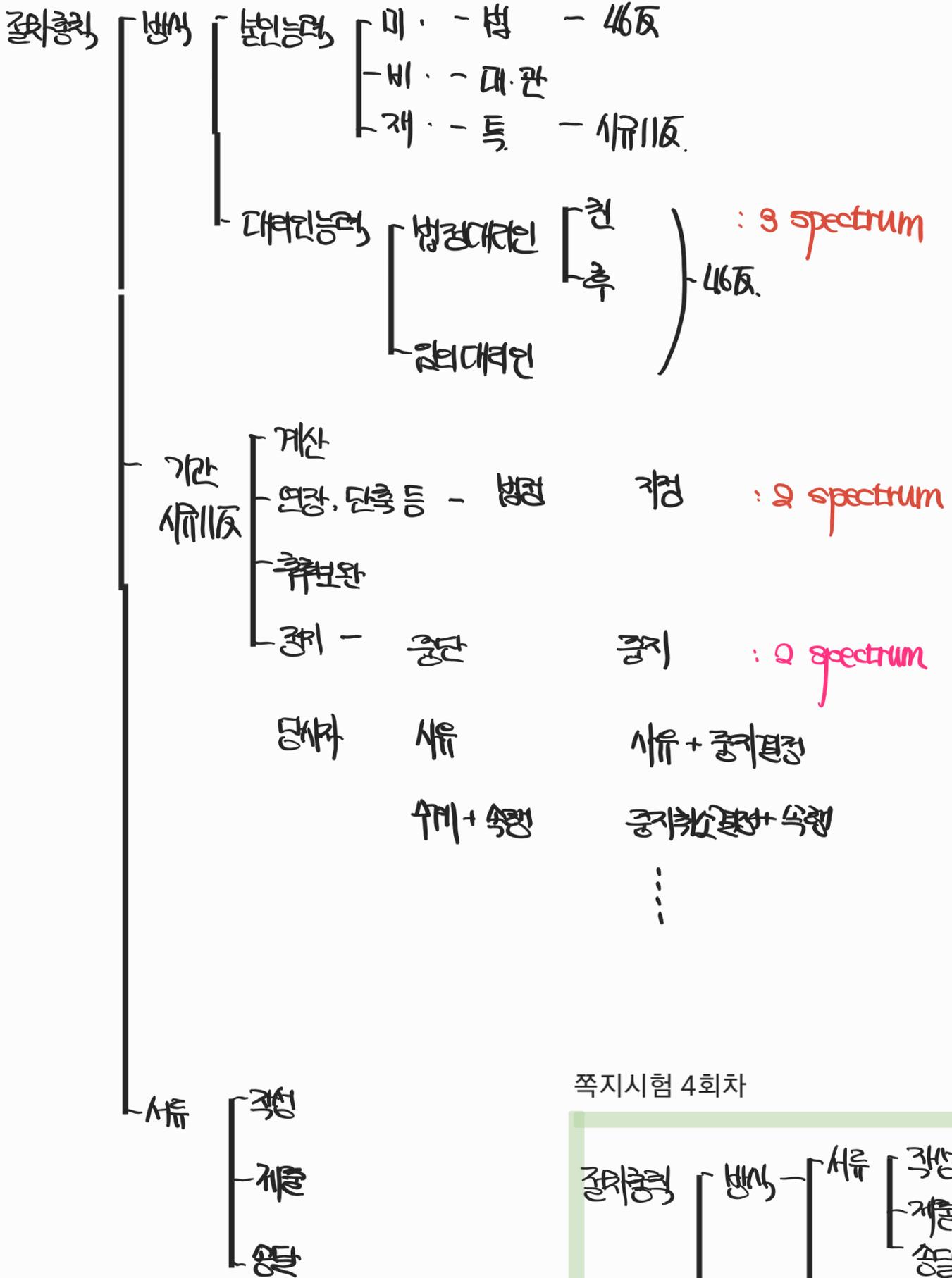
기본서 p.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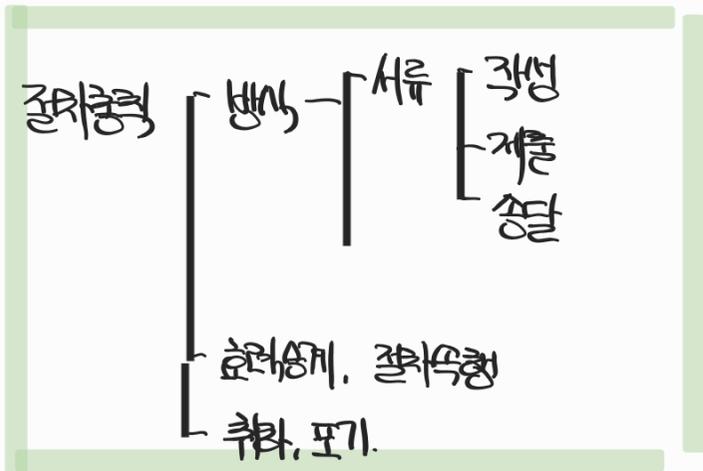
반려/수리	반려/수리	무효	반려/수리
무효	무효	무효	무효



쪽지시험 2회차



쪽지시험 4회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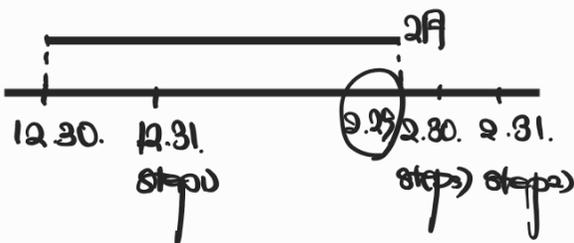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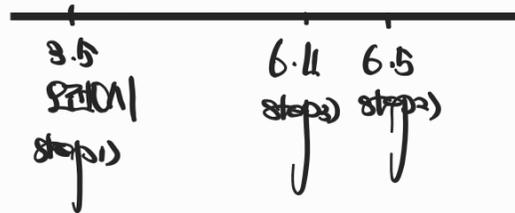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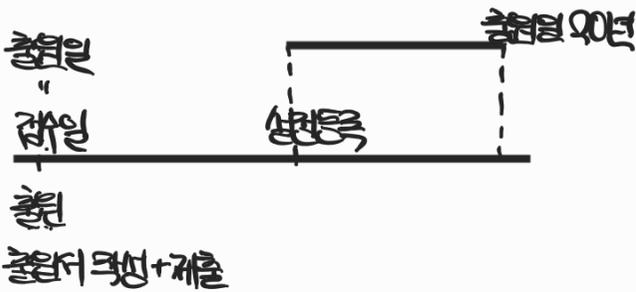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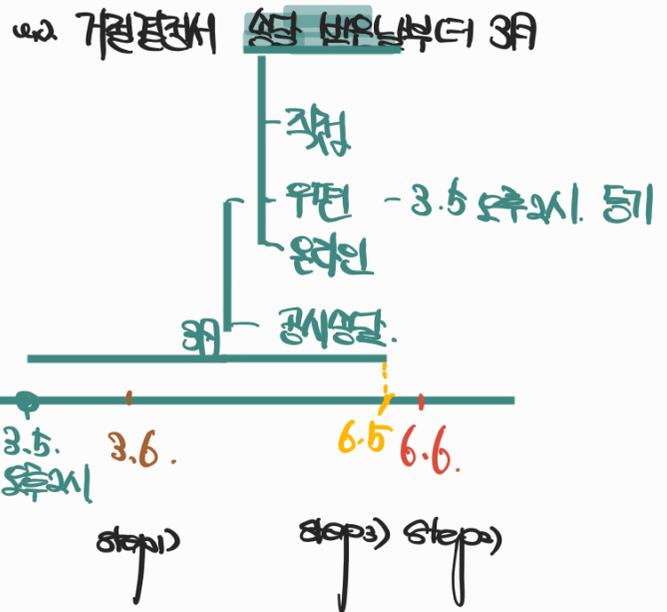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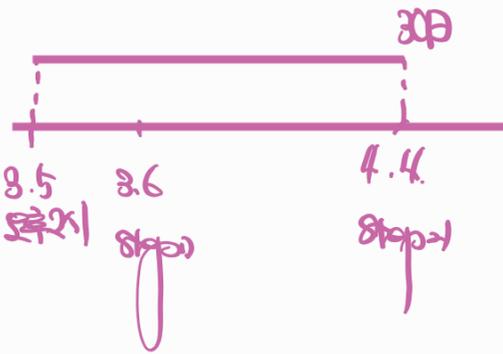
쪽지시험 3회차 제14조(기간의 계산)

A. 年 step1) 초월 불취입 (오전 0시 시작계위)
 step2) 해당 A. 年 더해
 step3) 전날 " 그 월 마지막날
 step4) 공휴일 deduct

B
 step1)
 step4)

기본서 p.17, 18

기간 변경 지점
 날부터 8월 9.7-5.7
 날부터 808
 날부터 80년



쪽지시험 3회차 15조(기간의 연장 등)

법원 vs 가건 2 spectrum

기본서 p.18, 19



특정가 제3자불이익
특판가.

기간연장 제한

two spectrum

법원기간

가건기간

연장.

132-17기간

1회 30日
교통법원 + K.

대상제한 X.

이해관계인
이외

특판 3원

단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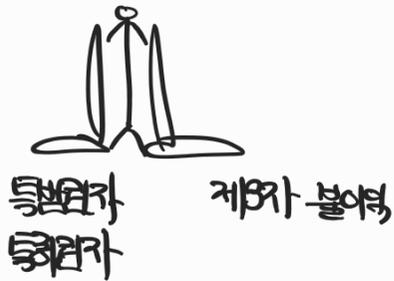
x

y

only 特판

	지명	법정
대상	16조	17, 67-3, 81-3
사유	정당	책x, 정당, 정당
기간	2월 1주	" " "

기본서 p.21



(1) 절차의 추후보완

1) 의의 및 취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정당한 사유 또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법정기간 또는 지정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당사자 구제를 위해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절차의 추후보완을 허용한다. 다만 해당 절차의 결과에 대한 제3자의 예측가능성을 고려해 추후보완은 기간의 만료일로부터 1년 내에만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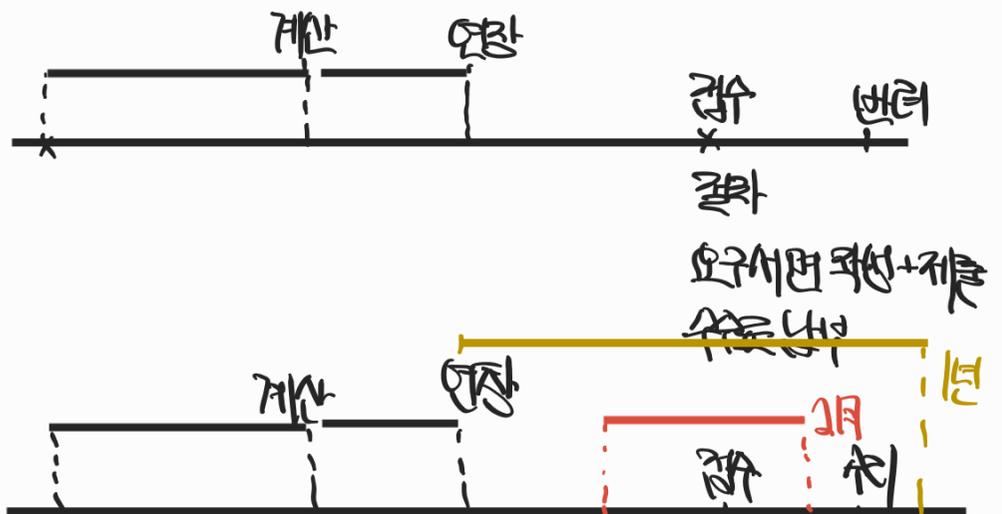
2) 가능한 절차 (특허법 제17조, 제67조의3, 제81조의3 제1항, 제16조 제2항)

가. 법정기간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기간, 재심청구기간, 심사청구기간, 재심사청구기간, 특허료납부 또는 보정기간

나. 지정기간

특허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17조 - 책x인x 소멸 : 추후보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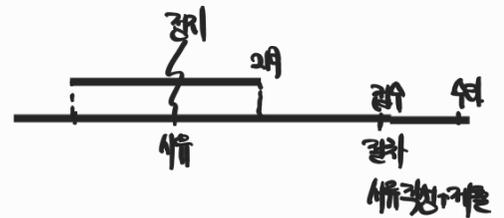
81-3, 81-3D, 16조 - 정당 소멸

중단 사유
 - 유효대리권 불소멸
 - 수계할 자
 - 수계권자

중지 사유
 ✓

2 spectrum

기본서 p.22, 23



중단

중지

사유

사·능·항·수·사상·사상·사상 ... 당연치
 (유효대리권 존재시 여부)

그 자격을 잃거나
 상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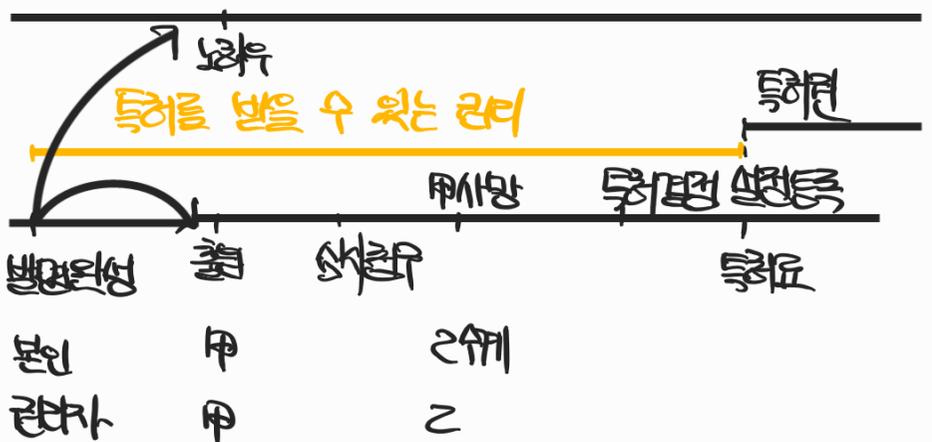
강제 ... 본인 ... 중지권
 취소권 ... 등기청산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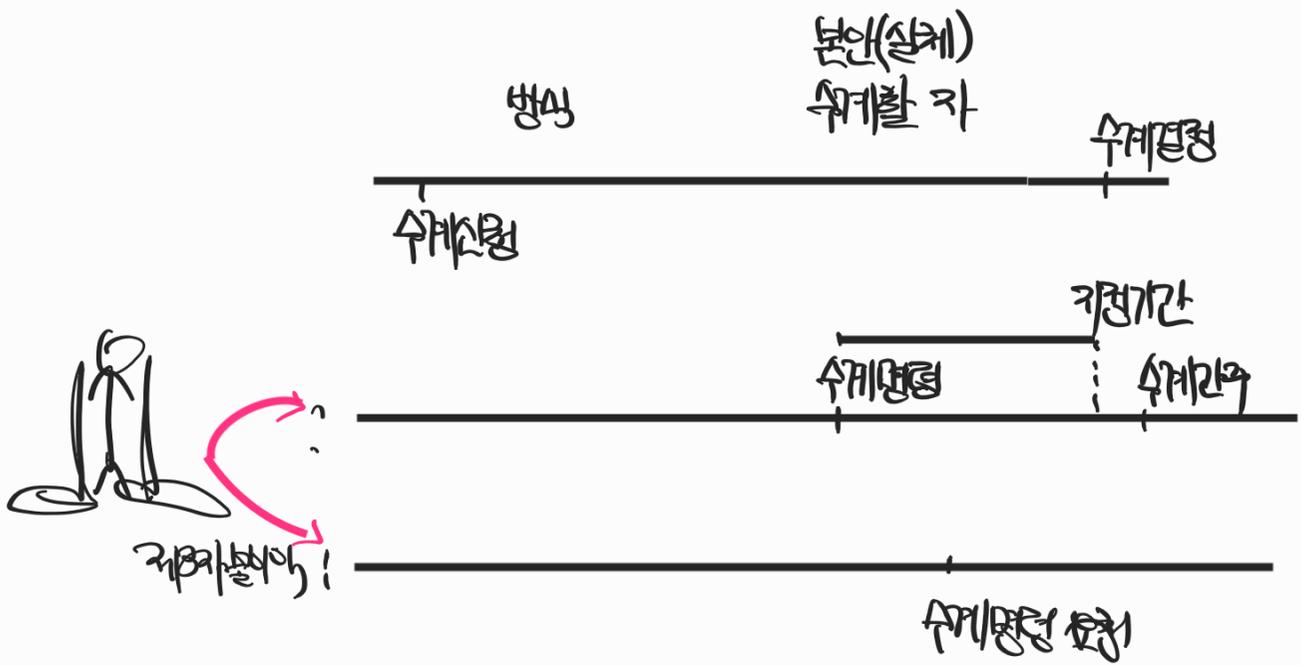
소행

수계 + 소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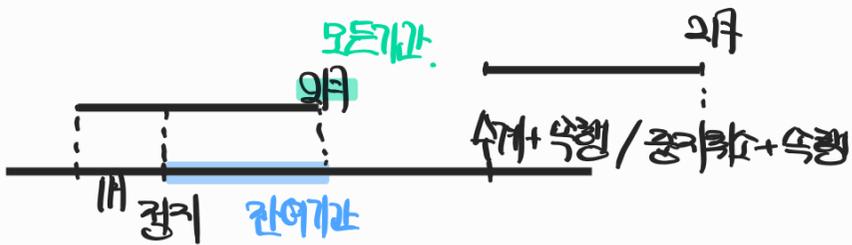
중지권소멸점 + 소행

수계소행
 수계행위
 수계행위소행





기본서 p.24



제28조(서류제출의 효력발생시기)

쪽지시험 4회차 시행규칙 제9조의4 ③

전산망에 - [사원공기 0 x

기본서 p.30

(1) 전자문서 효력 및 제출 효력 발생 시기 (특허법 제28조의3)

- 1) 전자문서화한 서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거나 이동식 저장장치 등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할 수 있다(특허법 제28조의3 제1항).
- 2) 전자문서는 일반서류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특허법 제28조의3 제2항).
- 3) 전자문서를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한 경우는 직접 또는 우편제출했을 때의 법리에 따라 제출의 효력 발생 시기가 결정된다. 전자문서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한 경우는 그 문서의 제출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접수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때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사용하는 접수용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내용으로 접수된 것으로 본다(특허법 제28조의3 제3항).
- 4) 전자문서를 기한 전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송하였으나 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인하여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제출인에게 기간의 해태 또는 귀책사유가 있었던 것은 아닌바, 그 장애가 제거된 날의 다음 날에 그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봐준다. 단 정보통신망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그 사용을 일시 중단한 경우로서 특허청장이 사전에 공지한 경우는 이를 장애로 보지 아니하고 있다(특허법 시행규칙 제9조의4 제3항).

[사원공기 0 x

(2) 전자문서 이용신고 및 전자서명 (특허법 제28조의4)

전자문서로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자는 미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전자문서 이용 신고를 하여야 하며,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전자문서에 제출인을 알아볼 수 있도록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쪽지시험 4회차 시행령 제18조 ④

특허법 시행령 제18조(서류의 송달등) ①법에 따라 송달할 서류는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이를 직접 수령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수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_____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법 제3조제1항의 본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송달은 그 법정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지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에게 준다."

쪽지시험 4회차 권리이전 / 제18조, 제19조

제18조(절차의 효력 승계)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받은 절차의 효력은 그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의 _____에게 미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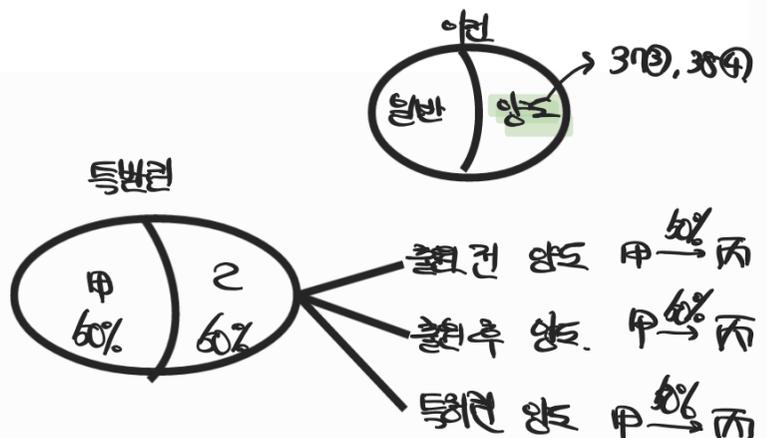
권리이전 (수권 - 특유, 특권 - 출원) 승계인

제19조(절차의 속행)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특허에 관한 절차가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係屬) 중일 때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가 _____되면 그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의 승계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_____하게 할 수 있다.

이전(승계)
일반승계, 특권승계(양도)
이전, 속행

쪽지시험 4회차 제37조 ③

③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_____를 받아야만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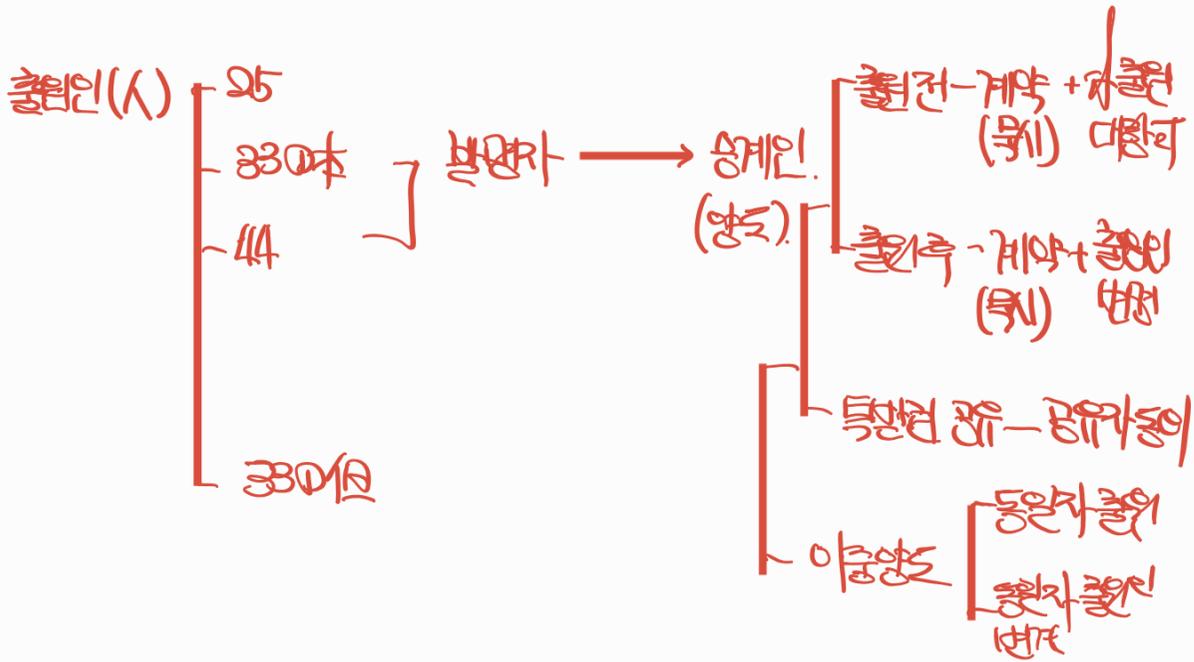


쪽지시험 4회차 제38조 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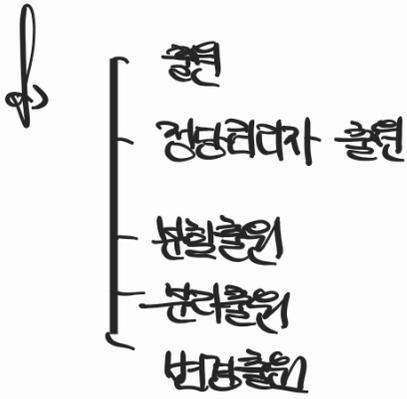
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승계인은 지체 없이 그 취지를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출원인 변경

쪽지시험 4회차 출원인(人) 관련 거절이유 정리



쪽지시험 5회차 출원 절차



쪽지시험 5회차 제99조의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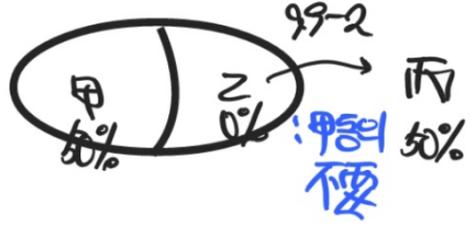
제99조의2(특허권의 이전청구) ① 특허가 제133조제1항제 _____ 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는 _____ 에 해당 특허권의 _____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그 _____)의 이전을 말한 다)을 청구할 수 있다.

930본反
41反 ✓
✓

② 제1항의 청구에 기초하여 특허권이 이전등록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는 그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날부터 이전등록을 받은 자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특허권
2. 제65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청구권
3. 제207조제4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청구권

제99조



③ 제1항의 청구에 따라 공유인 특허권의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제9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그 지분을 이전할 수 있다.

지분양도 : 甲의 50%



제2호 본문, 법원, 이전, 지분

이전(甲) 출원권 출원수 특허

일반상계



양도 [계약 계약 + 출원권 배분 계약 + 이전등록
 + 타공유자 동의 + 타공유자 동의. + 타공유자 동의

쪽지시험 5회차 출원절차(주)(기)(서)(효) / 제42조

제42조(특허출원) ① 특허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특허출원서를 특허청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허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특허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 [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발명의 명칭

4.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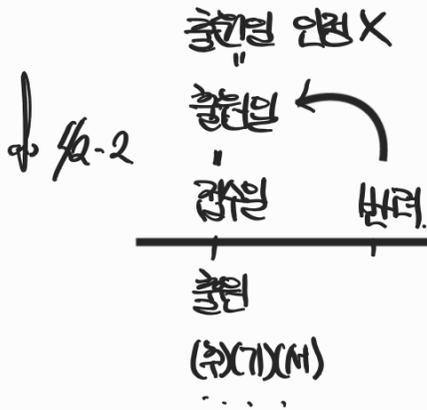
②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서에는 발명의 설명·청구범위를 적은 명세서와 도면 및

실예를 첨부하여야 한다.

출원절차 (주)(기)(서)(효)

출원서, 주소, 주소, 발명자, 명세서, 필요한, 요약서

쪽지시험 5회차 제42조의2



제42조의2(특허출원일 등) ① 특허출원일은 명세서 및 필요한 도면을 첨부한 특허출원서가 특허청장에게 도달한

날로 한다. 이 경우 명세서에 _____ 는 적지 아니할 수 있으나, 발명의 설명을 적어

입사명세서 출원 절차야 한다 (주)(기)(서)(료) → 출원서 반려사유 없어야 출원일 인정

if not 반려 if not 반려

② 특허출원인은 제1항 후단에 따라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부보류 결정 (주) = 앞명세서 절차 보류 경우
제64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_____ 이 되는 날까지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는 _____ 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기한 이전에 제60조제3항에 따

른 출원심사 청구의 취지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_____ 이 되는 날

또는 제64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2개월이 되는 날 중 _____ 까지 보정
(70)
을 하여야 한다.

③ 특허출원인이 제2항에 따른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기한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해당

if not 특허출원을 _____ 한 것으로 본다.

step 1) 외국어출원절차

step 2) 번역절차

step 3) 도면 취지

step 4) 국문출원

제42조의3(외국어특허출원 등) ① 특허출원인이 명세서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 이하 제2항 및 제

3항에서 같다)을 국어가 아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언어로 적겠다는 _____를 특허
출원할 때 특허 _____에 적은 경우에는 그 언어로 적을 수 있다.

② 특허출원인이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및 도면을 제1항에 따른 언어로 적은 특허출원(이하 "외

국어특허출원"이라 한다)을 한 경우에는 제64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_____이
되는 날까지 그 명세서 및 도면의 국어번역문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기한 이전에 제60조제3항에 따른 출원심사 청구의 취지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
은 날부터 _____이 되는 날 또는 제64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2개월이 되
는 날 중 _____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특허출원인은 제2항에 따른 기한 이전에 그 국어번역문을 갈음하여 새

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명세서 또는 도면을 _____ (제5항에 따라 보정한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
우
2. 특허 _____ 이 출원 _____ 를 한 경우

취지, 출원, 출원서, 1년 2개월, 3개월, 빠른 날, 보정, 출원인, 심사의 청구

④ 특허출원인이 제2항에 따른 명세서의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기한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해당 특허출원을 _____ 한 것으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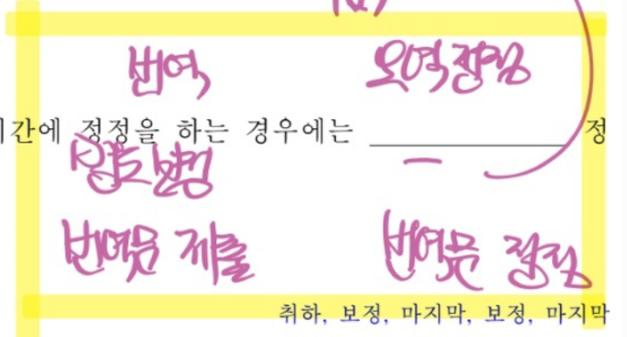
⑤ 특허출원인이 제2항에 따른 국어번역문 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경우에는 외

국어특허출원의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및 도면을 그 국어번역문에 따라 _____ 한 것
으로 본다. 다만, 제3항 본문에 따라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경우에는 _____ 국어번역
문(이하 이 조 및 제47조제2항 후단에서 "최종 국어번역문"이라 한다) 전에 제출한 국어번역문에 따라 보정한

것으로 보는 모든 보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⑥ 특허출원인은 제47조제1항에 따라 번역 을 할 수 있는 기간에 최종 국어번역문의 잘못된 번역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정된 국어번역문에 관하여는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제6항 전단에 따라 제4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기간에 정정을 하는 경우에는 정 전에 한 모든 정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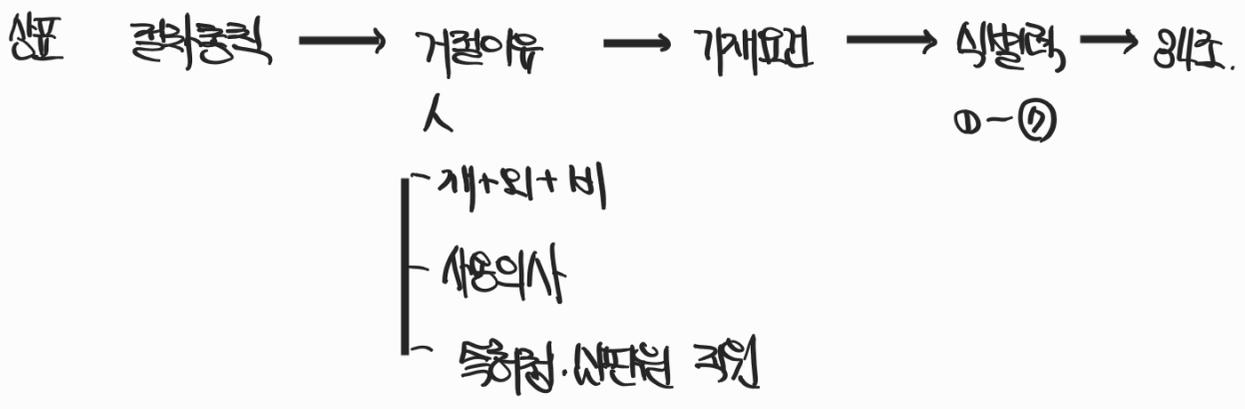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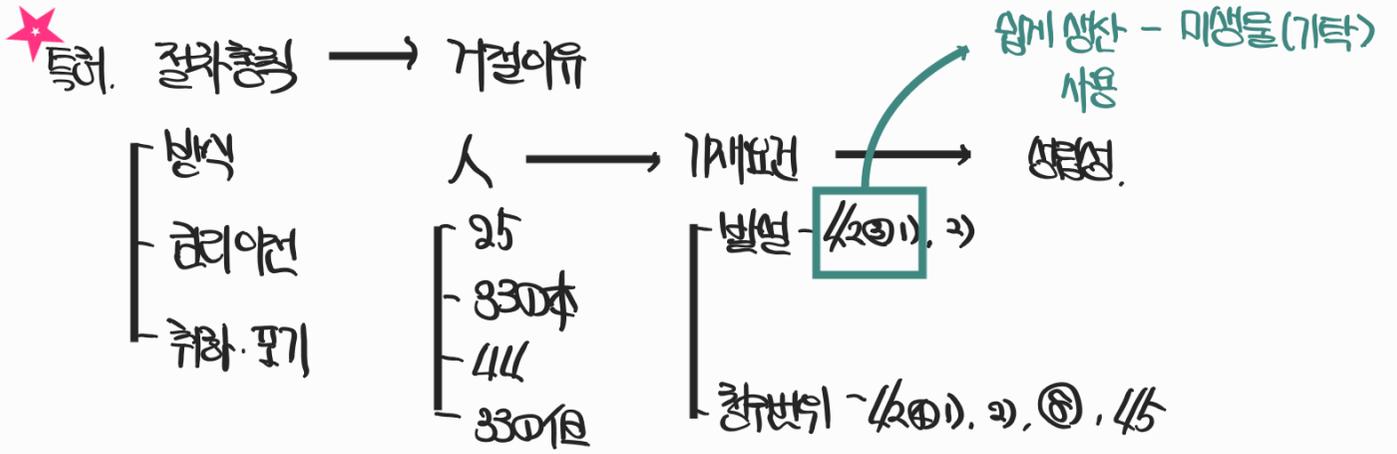
steps 번역하지 못하면

제47조(특허출원의 보정) ① 특허출원인은 제66조에 따른 특허결정의 등본을 송달하기 전까지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할 수 있다. 다만, 제63조제1항에 따른 거절이유통지(이하 "거절이유통지"라 한다)를 받은 후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제3호의 경우에는 그 때)에만 보정할 수 있다.

1. 거절이유통지(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보정에 따라 발생한 거절이유에 대한 거절이유통지는 제외한다)를 최초로 받거나 제2호의 거절이유통지가 아닌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 기간
2. 거절이유통지(제66조의3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 통지 전의 거절이유통지는 제외한다)에 대한 보정에 따라 발생한 거절이유에 대하여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
3. 제67조의2에 따른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청구할 때

② 제1항에 따른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은 특허 국 에 국 로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어특허출원에 대한 보정은 국 국어번역문(제42조의3제6항 전단에 따른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정된 국어번역문을 말한다) 또는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은 제외한다)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도 하여야 한다.

⑤ 외국어특허출원인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42조의3제2항에 따라 국 을 제출한 경우에만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할 수 있다.



쪽지시험 6회차 미생물의 기탁 / 시행령 제2조 / 기본서 p.404

1. 「특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1항에 따라 미생물 기탁 및 분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하 "국내 기탁기관"이라 한다)
2.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 제7조에 따라 국제기탁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한 기관(이하 "국제 기탁기관"이라 한다)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국가에서 미생물 기탁 및 분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이하 "지정 기탁기관"이라 한다)
 - 가.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 조약」의 당사국이 아닐 것
 - 나. 해당 국가의 특허청장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에 대해 대한민국과 동일한 조건의 절차를 인정하기로 특허청장과 합의한 국가일 것

기탁기관

기탁

특허청

출원 기탁

(주)(기)(사)(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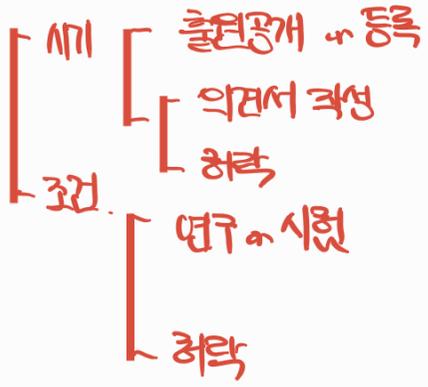
- ② 제1항에 따라 미생물을 기탁한 자는 특허출원서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K)를 적고, 미생물의 기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국제기탁기관에 기탁한 경우에는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 규칙」 제7규칙에 따른 수탁증 중 최신의 _____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 다만, 국내에 소재지가 있는 국내기탁기관 또는 국제기탁기관에 해당 미생물을 기탁한 경우에는 미생물의 기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 ③ 특허출원인 또는 특허권자는 제1항의 미생물의 기탁에 대하여 특허출원후 새로운 수탁번호가 부여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세) 출원서 쓰기

증명서류(국내 국제기탁, 국제기탁)

명세서 수탁번호 기탁시 생략(적)

쪽지시험 6회차 시행령 제4조





쪽지시험 7회차



쪽지시험 7회차 기재요건 / 제42조, 시행령 제5조, 제45조, 시행령 제6조

제42조(특허출원) ③ 제2항에 따른 발명의 설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적을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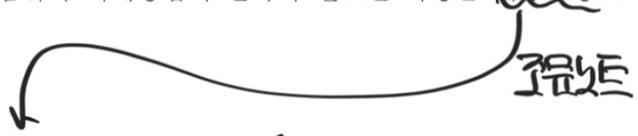
2. 그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을 적을 것 ^{only 거절이유.}

④ 제2항에 따른 청구범위에는 보호받으려는 사항을 적은 항(이하 "청구항"이라 한다)이 하나 이상 있어야 하며, 그 청구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

2.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적혀 있을 것

⑧ 제2항에 따른 청구범위의 기재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특허법 시행령 제5조(청구범위의 기재방법) ① 법 제42조제8항에 따른 청구범위의 청구항(이하 "청구항"이라 한다)을 기재할 때에는 독립청구항(이하 "독립항"이라 한다)을 기재하여야 하며, 그 독립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종속청구항(이하 "종속항"이라 한다)을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그 종속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다른 종속항을 기재할 수 있다.



② 청구항은 발명의 성질에 따라 적정한 수로 기재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다른 청구항을 인용하는 청구항은 인용되는 항의 번호를 적어야 한다. : according to proceeding claims

⑤ 2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청구항은 인용되는 항의 번호를 택일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⑥ 2 이상의 항을 인용한 청구항에서 그 청구항의 인용된 항은 다시 2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방식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이상의 항을 인용한 청구항에서 그 청구항의 인용된 항이 다시 하나의 항을 인용한 후에 그 하나의 항이 결과적으로 2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방식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⑦ 인용되는 청구항은 인용하는 청구항보다 먼저 기재하여야 한다.

⑧ 각 청구항은 항마다 행을 바꾸어 기재하고, 그 기재하는 순서에 따라 아라비아숫자로 일련번호를 붙여야 한다.

: only 가릴이유

제45조(하나의 특허출원의 범위) ① 특허출원은 하나의 발명마다 하나의 특허출원으로 한다. 다만, 하나의 총괄적 발명의 개념을 형성하는 일 군(群)의 발명에 대하여 하나의 특허출원으로 할 수 있다. : 동일항 2개 이상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일 군의 발명에 대하여 하나의 특허출원으로 할 수 있는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only 가릴이유

특허법 시행령 제6조(1군의 발명에 대한 1특허출원의 요건) 법 제4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1군의 발명에 대하여 1특허출원을 하기 위하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청구된 발명간에 기술적 상호관련성이 있을 것

2. 청구된 발명들이 동일하거나 상응하는 기술적 특징을 가지고 있을 것. 이 경우 기술적 특징은 발명 전체로 보아 선행기술에 비하여 개선된 것이어야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선립선**

1. "발명"이란 _____, _____을 이용한 _____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을 말한다.

자연법칙,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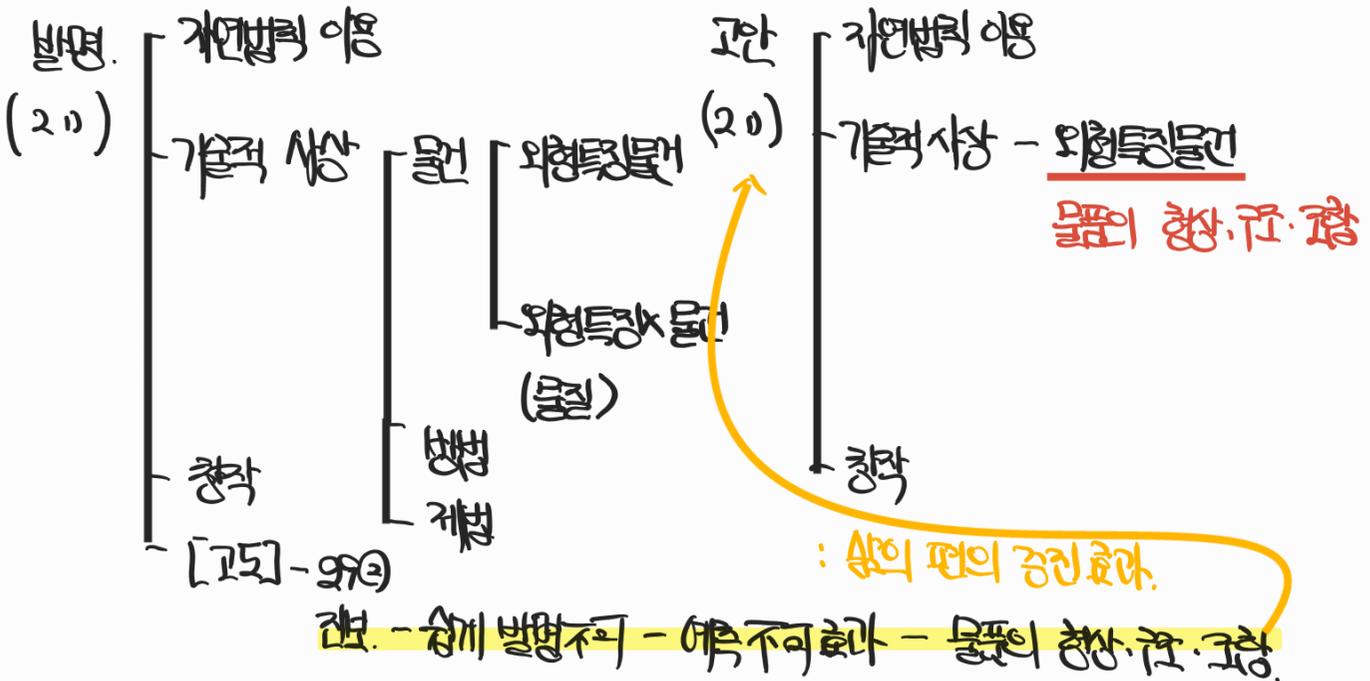
제29조(특허요건) ① _____상 이용할 수 있는 _____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신립선
신립선 **이용가능성** [**이용가능성** 의미]
의료행위

1. 특허출원 전에 _____ 또는 _____에서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된 발명

2. 특허출원 전에 _____ 또는 _____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 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는 발명 // **290각조 제외.**

② 특허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_____을 가진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명에 의하여 _____ 발명할 수 있으면 그 발명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진보성**



발행

18

고안

고안

고도미용

권보성 - 쉽게不可
(299)

쿠하 쉽게不可
(42)

장기간 - 출판일 20년
(88)

출판일 10년
(22)

외형특징

국가출장 통·유사 불가 - 상표/디자인권
(61)

무면필수

미정식시 출생시 변경 (실시제 170)
PCT출원 국제단계 진출 (36) ✓

- 외형특징물과 관계없는 기술 - 발명발명 권유권, 의제특상 조제

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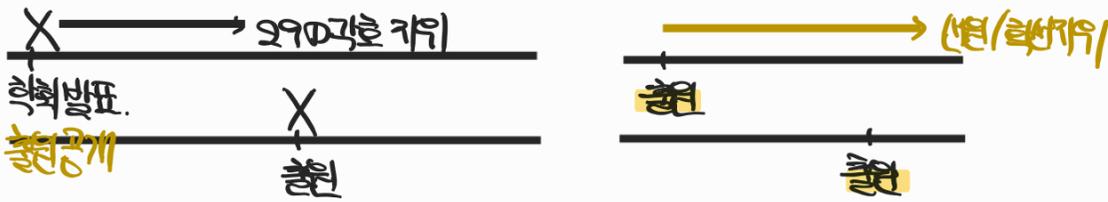
외형에 있는 것

외형특징과 유사한 것의
특성이 국제수준에
국제특허권

생신방법추경, 기타 등이 따른 장기간
연장, /차단권, 노복 ...

...

쪽지시험 7회차 확산 / 제29조 ③, ④ (cf. ⑤, ⑥, ⑦ : part8. 국제출원)
 / 기본서 p.136 / 필기자료 7회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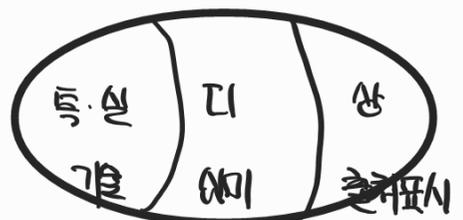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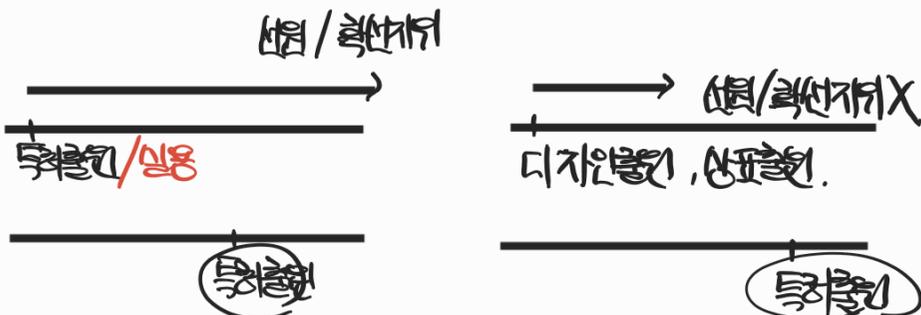


③ 특허출원한 발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다른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_____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한 경우에 그 발명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그 특허출원의 _____와 다른 특허출원의 발명자가 같거나 그 특허출원을 _____의 출원인과 다른 특허출원의 _____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그 특허 _____ 전에 출원된 특허출원일 것
2. 그 특허출원 후 제64조에 따라 _____ 되거나 제87조제3항에 따라 _____ 된 특허출원일 것

④ 특허출원한 발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_____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고안(考案)과 동일한 경우에 그 발명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그 특허출원의 발명자와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고안자가 같거나 그 특허출원을 출원한 때의 출원인과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인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그 특허출원일 전에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일 것
2. 그 특허출원 후 「실용신안법」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이 법 제64조에 따라 출원공개되거나 「실용신안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등록공고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일 것



제36조(선출원) ①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_____에 둘 이상의 특허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_____ 특허출원한 자만이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형의제 ②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_____에 둘 이상의 특허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특허출원인 간에 _____하여 정한 하나의 특허출원인만이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_____ 특허출원인도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다.

③ 특허출원된 발명과 _____[★]된 ^{실용신안}고안이 동일한 경우 그 특허출원과 실용신안등록출원이 다른 날에 출원된 것이면 제1항을 준용하고, 그 특허출원과 실용신안등록출원이 같은 날에 출원된 것 이면 제2항을 준용한다.

선원지위 ④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_____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_____, _____ 또는 _____ 된 경우
2. _____ 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_____ 이 확정된 경우

⑤ _____ 또는 고안자가 아닌 자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_____ 이 아닌 자가 한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반원지위**

⑥ 특허청장은 제2항의 경우에 특허출원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협의의 결과를 신고할 것을 명하고, 그 _____에 신고가 없으면 제2항에 따른 협의는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쪽지시험 7회차 제36조

거절이유 / 제62조

정보제공 / 제63조의2

직권재심사 / 제66조의3

특취 / 제132조의2

특무 / 제133조 (42③2), ⑧, 45 + 47②후, 52-2①각호)

출원 취하간주 / 제42조의2

방식反: 절차무효 / 제46조

방식反: 서류반려 / 시행규칙 제11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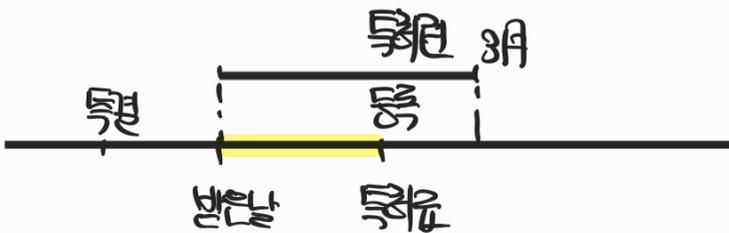
쪽지시험 7회차 실용신안 /
p.15(제2조)~p.20(제22조)

	특허법	실용신안법	생상방법 추정규정	有 (특허법제129조)	無
대상	발명 (물건, 방법, 제조방법 카테고리 포함) (특허법제2조3호)	물품의 형상, 구조, 조합에 관한 고안 (물품성 수반하는 협의의 물건 카테고리만 해당) (실용신안법제4조1항)	PCT(도면제출)	-	실용신안법 제36조(도면 제출) ①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국제출원이 도면을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 기준일까지 도면(도면에 관한 간단한 설명을 포함한다)을 특허청장에게 제출 ② 도면 미제출시 또는 도면의 국어번역문의 미제출시 특허청장은 제출명령 가능 ③ 특허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미제출시 그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을 무효 가능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도면 및 도면의 국어 번역문은 특허법 47조의 보정으로 취급. 단, 「특허법」 제47조제1항의 보장기간은 도면의 제출에 미적용.
성립 요건	고도성 要 (특허법제2조1호→특허법제29조제2항에서 평가)	고도성 不要 (실용신안법제2조1호→실용신안법제4조제2항의 문구가 특허법제29조제2항과 상이)			
진보성	쉽게 (특허법제29조2항)	극히 쉽게 (실용신안법제4조2항)			
부등록사유	공서양속 문란, 공중의 위생 해할 염려 있는 발명 (특허법제32조)	공서양속 문란, 공중의 위생 해할 염려 있는 발명 + 국기, 훈장과 동일, 유사 고안 (실용신안법제6조)			
도면첨부要否	필요한 경우만 (특허법제42조2항)	필수 / 미제출시 반려 (실용신안법제8조2항 / 실용신안법시행규칙제17조제1항)			
우선심사대상의 상이	1. 녹색기술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2. 인공지능 또는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을 활용한 특허출원 3. 특허청이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조사기관으로서 국제조사를 수행한 국제특허출원 4. 특허청장이 외국특허청장과 우선심사 하기로 합의한 특허출원 (특허법시행령제9조) 3. 타법에 따른 우선심사 대상 특허출원 (특허법시행규칙제39조)	1. 공해방지에 유용한 실용신안등록출원 (실용신안법시행령 제5조)	침해죄	반의사불벌죄,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특허법 제225조 제2항).	반의사불벌죄,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실용신안법 제45조 제2항).
존속기간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 (특허법제88조1항)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실용신안등록출원일 후 10년 (실용신안법제22조1항)	물수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 또는 그 침해행위로부터 생긴 물건은 몰수하거나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그 물건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것을 선고하여야 한다(특허법 제231조).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 또는 그 침해행위로부터 생긴 물건은 몰수하거나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그 물건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것을 선고할 수 있다(실용신안법 제51조).
존속기간 연장제도	허가 등(특허법제89조) & 등록지연(특허법제92조2)	등록지연(실용신안법제22조의2)	전문심리위원 비밀누설죄	전문심리위원 또는 전문심리위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특허법 제226조 제2항).	-
효력제한	1. 연구, 시험 2. 국내통과 3. 특허출원시 물건 4. 약사법상 조제 (특허법제96조)	1. 연구, 시험 2. 국내통과 3. 특허출원시 물건 (실용신안법제24조)			
간접침해	물건, 방법 모두 규정 有 (특허법제127조)	방법/물건에 관한 규정은 無 (실용신안법제29조)			

쪽지시험 8회차

chapter 3 출제 - 800 1)	800 2)	47
(가) 출	출	출
★(나) 1년(2A)	1년	가진, 출, 출, 재심사청구
300) ★(다) 출사출원서 청구 (공개일자, 공개형태) 출원일 30일 공개서류	-	보상
(라) 270각호거부 X	270각호거부 X	명도반영
(마) 출원공개, 등록등	-	

쪽지시험 8회차 제30조 ②, ③



쪽지시험 8회차 최초거통, 최후거통, 재심사청구 시 / 제47조

기간

출원 → 최초 거통, 재심사청구 X → 최후 거통 X

2. 거절이유통지 (제66조의3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 통지 전의 거절이유통지는 제외한다)에 대한

chapter 4 권리기간

보정에 따라 발생한 거절이유에 대하여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거절이유통지에 따른

기간

쪽지시험 8회차 제51조

제51조(보정각하) ① 심사관은 제47조제1항 취부 및 개사에 따른 보정이 같은 조 402 또는 403을 위반하거나 그 보정(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보정 중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은 제외한다)에 따라 610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면 결정으로 그 보정을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제66조의2에 따른 직권보정을 하는 경우: 그 _____ 전에 한 보정
- 2. 제66조의3에 따른 직권 재심사를 하는 경우: 취소된 _____ 전에 한 보정
- 3. 제67조의2에 따른 재심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 그 _____ 전에 한 보정

반박불가

② 제1항에 따른 기보정 각하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다만, 제132조의17에 따른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_____에서 그 각하결정(제66조의3에 따른 직권재심사를 하는 경우 취소된 특허거절 전에 한 각하결정과 제67조의2에 따른 재심사청구가 있는 경우 그 청구 전에 한 각하결정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다투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반박불가

제2호, 제3호, 제2항, 제3항, 새로운 거절이유, 직권보정, 특허결정, 청구, 심판, 직권 재심사, 재심사

제170조(심사규정의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의 준용) ①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 관하여는 제47조제1항 제1호·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51조, 제63조, 제63조의2 및 제6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1조제1항 본문 중 "제4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보정"은 "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정(제132조의17의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_____ 전에 한 것은 제외한다)"으로, 제63조의2 본문 중 "특허청장"은 "특허심판원장"으로 본다.

제63조(거절이유통지) ①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허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제51조제1항에 따라 _____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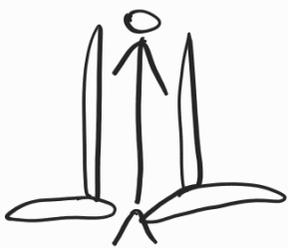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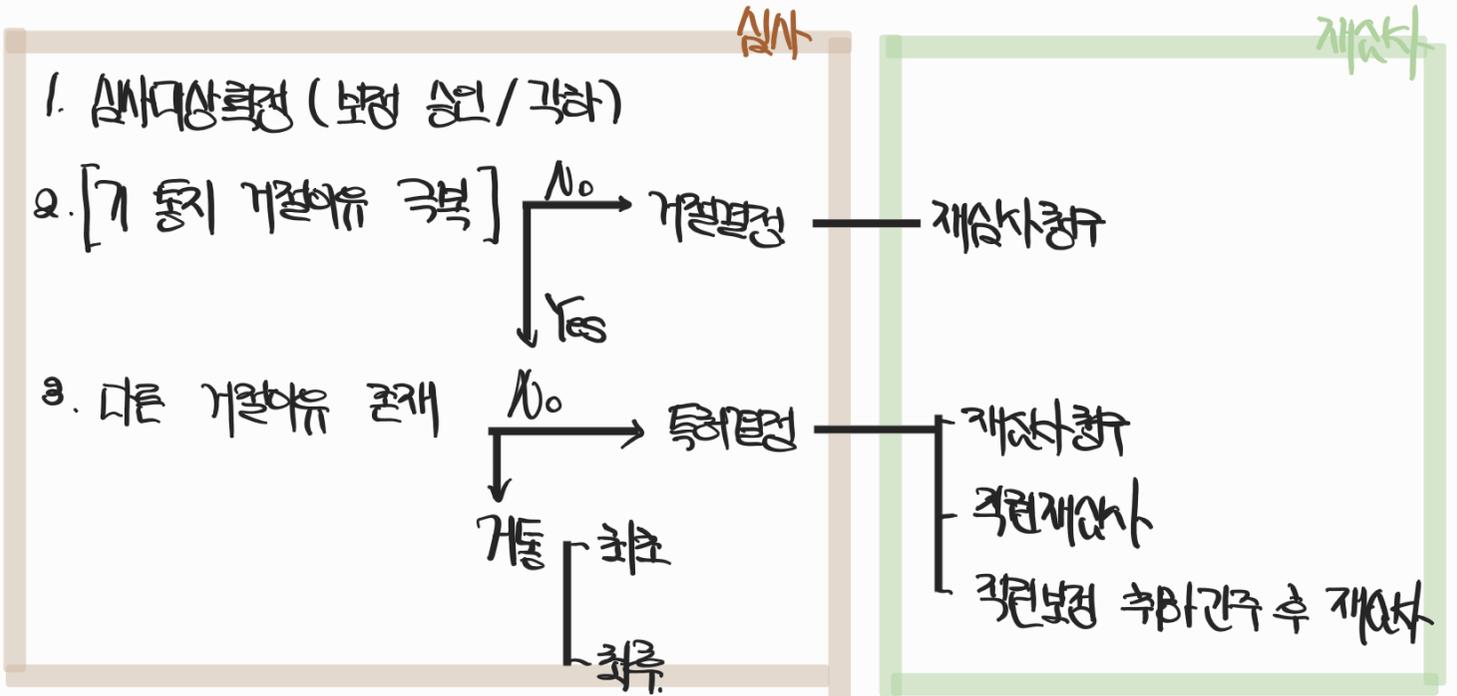
예외사항

Chapter 1. 권역분리

Chapter 2. 기밀어유

Chapter 3. 출입 - 출입 보안절차

Chapter 4. 심사 공개



특허권자의

특허권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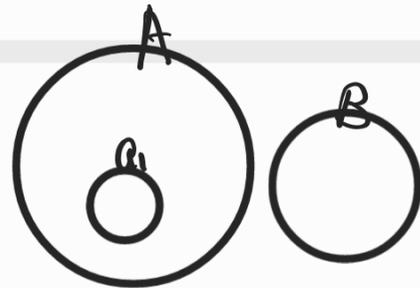
↓
명도보령권

(위) 출

(가) 자진, 최초, 최후, 재심사청구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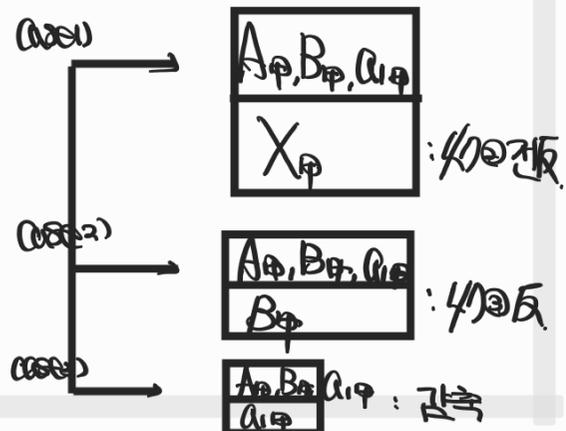
(나) 보령서

(다) 명도보령



제3자 불이익 [정정사 - 4/10 전. A_p, B_p, A, B ← 명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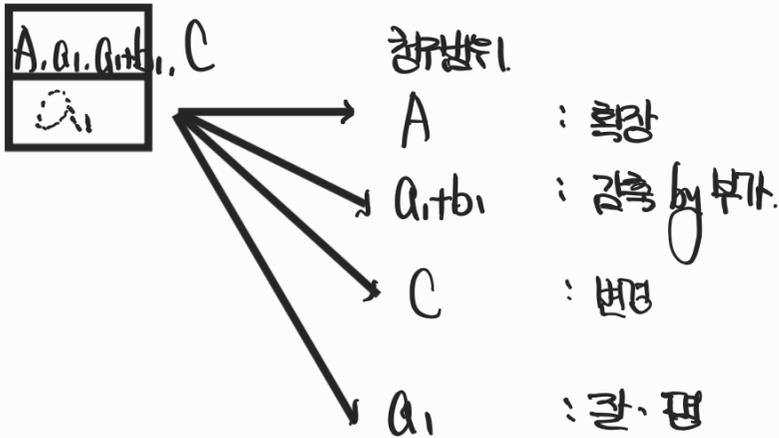
심사관 - 4/10, 2, 3, 5/10 A_p ← 최후보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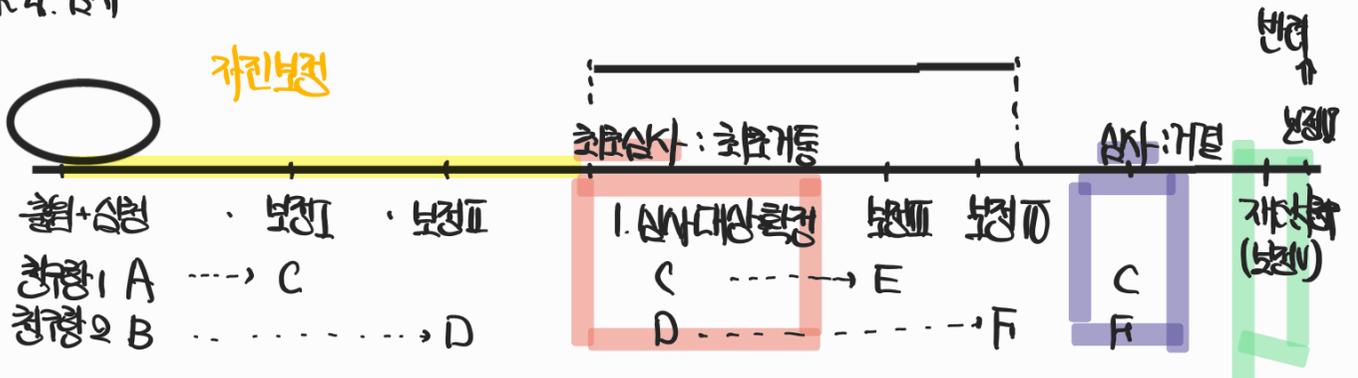
Chapter 4. 시사

	110反 (1202 등...) 470反	OK, bnt. 확장, 변형 ↑ 470反	2회 이상
자신	심 + 추후기등	심	각각
추후	심 + 추후기등 : 부근부근	심	마지막
추	각화 + 90% 기결 : 폭발	각화 + 90% 기결	마지막
개사	각화 + 90% 권변	각화 + 90% 권변	추

주요.



Chapter 4. 시사



보정양하 사유 종류. 개선사

《1》②, ③. ⑤/⑩

→ 정당한 사제 보정 예외.

예고통지X, 단독발부족X. 기결 함께만 불복리

보정 III. 각항사유有, bmc 각항X → 보정 III 옳. → 보정 III 각항不可

기결X

보정 III. 각항사유無, bmc 각항O

→ 보정 II

개선사행위
각항개선사

→ 보정 II 각항 불복不可

각항보정 취하 가능 즉 개선사

예) 보정 III 각항+기결X 개선사행위

기결X

1. 보정 III 각항유부
보정 III 옳다.
보정 II O 기결X
2. 만약 보정 III 각항행위
보정 III 옳다
보정 II O 기결X

쪽지시험 9회차 / 각종 절차 - Ch3. 출원(주)(기)(서)(효)

쪽지시험 9회차 정당권리자 출원 /

제34조(출원 단계-거절결정 확정, 기각심결 확정), 제35조(특허 단계-무효심결 확정)

출원
 - 정당 - 출원일 소견서
 - 분할/보정/변경 - 출원일 소견서

쪽지시험 9회차 제52조 / 기본서 p.173

step 1) (주)(기)(서)(효)
 step 2) 출원일 소견서 예외
 확 / 공고
 step 3) 130R, 30R, 30R, 3기
 step 4) 중복특허우려, 기각우려
 step 5) 신규사실추가금지.

출원
 (주)(기) 제52조(분할출원) ① 특허 _____ 은 둘 이상의 발명을 하나의 특허출원으로 한 경우에
 는 그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_____ 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 그 일부를 하나 이상의 특허출원으로 분할할 수 있다. 다만 그 특허출원이 외국어특허출원인 경우에는 그 특허출원에 대한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_____ 이 제출된 경우에만 분할할 수 있다.

특허출원인
 (주) 2 이상 발명 내다
 (기) (분할·보정)
 신규사실추가금지 : 기각우려
 출원 범위: 보·보·변·심(심)·조
 출원 안의 : 보·심(심)·조

(1) 1. 제47조제1항에 따라 _____ 을 할 수 있는 기간
 2. 특허 _____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제15조제1항에 따라 제132조의17에 따른 기간이 연장된 경우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이내의 기간
 3. 제66조에 따른 _____ 또는 제176조제1항에 따른 특허거절결정 취소심결(특허 등록을 결정한 심결에 한정하되, 재심심결을 포함한다)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다만, 제79조에 따른 _____ 을 받으려는 날이 3개월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날까지의 기간

② 제1항에 따라 분할된 특허출원(이하 "분할출원"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그 분할출원은 특허출원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분할출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에는 해당 분할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분할출원
(5): 출원일 소급

특/공조국: 출원일 소급 예!

대: 혁신재!

1. 분할출원이 제29조제3항에 따른 _____ 또는 「실용신안법」 제4조제4항에 따른 특허출원에 해당하여 이 법 제29조제3항 또는 「실용신안법」 제4조제4항을 적용하는 경우

- 2. _____ 을 적용하는 경우
30(1)
- 3. _____ 을 적용하는 경우
54
- 4. _____ 을 적용하는 경우
55.

원출원서 × 분할출원서
출원서 기재

③ 제1항에 따라 분할출원을 하려는 자는 분할출원을 할 때에 특허출원서에 그 _____ 및 분할의 기초가 된 특허 _____ 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step 1) (H)

④ 분할의 기초가 된 특허출원이 제54조 또는 제55조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특허출원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분할출원을 한 때에 그 분할출원에 대해서도 _____을 한 것으로 보며, 분할의 기초가 된 특허출원에 대하여 제54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 또는 서면이 있는 경우에는 분할출원에 대해서도 해당 서류 또는 서면이 _____된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것으로 보는 분할출원에 관하여는 제54조제7항 또는 제55조제7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도 분할출원을 한 날부터 _____이내에 그 우선권 주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할 수 있다.

⑥ 분할출원의 경우에 제54조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는 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서류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도 분할출원을 한 날부터 _____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⑦ 분할출원이 외국어특허출원인 경우에는 특허출원인은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국어번역문 또는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른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도 분할출원을 한 날부터 _____이 되는 날까지는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제42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수 없다.

⑧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지 아니한 분할출원에 관하여는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도 분할출원을 한 날부터 _____이 되는 날까지는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는 보정을 할 수 있다.

분할출원 외국어
특허출원인
국어
+30B
+30B
+30B
+30B

step 1
step 2
step 3

+30B

+30B

+30B

제52조의2(분리출원) ① 특허거절결정을 받은 자는 제132조의17에 따른 심판청구가 _____ 된 경우
 (주) : 합출원 가발 가발 가발
 우 그 심결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_____ (제186조제5항에 따라 심판장이 부가기간

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가)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_____ 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합출원 그 특허출원의 일부를 새로운 특허출원으로 분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새

로운 특허출원의 특허청규제 : 52-20전 2이상 발명 나뉜다 52-20그문 _____ 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항만을
특허출원 적을 수 있다. 합출원 가발 합출원 청구항 나

가발 당시 합출원 → 가발 → A: 500反 가발

1. 그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특허 _____ 에서 _____ 되지 아니한 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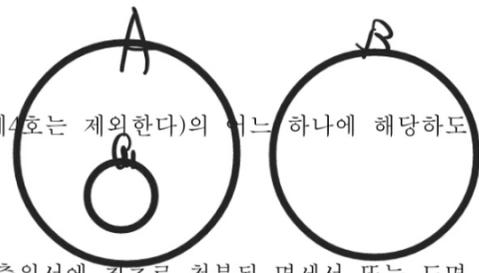
구항 가발 합출원 가 A, a, B, C A: 290反 가발 B

2. _____ 된 청구항에서 그 특허 _____ 의 기초가 된 선택적

기재사항을 _____ 한 청구항 a1

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청구항을 제47조제3항 각 호(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도

록 적은 청구항 a1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의 청구항에서 그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

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를 벗어난 부분을 삭제한 청구항

step 2) 출원일 소급/여의

② 제1항에 따라 분리된 특허출원(이하 “분리출원”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제5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분할”은 “분리”로, “분할출원”은 “분리출원”으로 본다.

step 4) 가발

③ 분리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제42조의2제1항 후단 또는 제42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에 _____ 를 적지 아니하거나 명세서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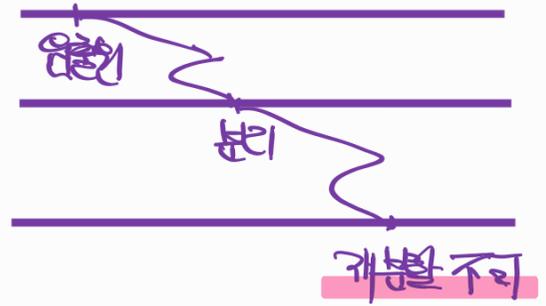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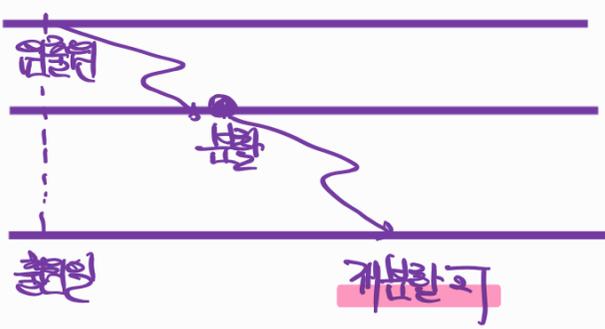
작성하지

분에 한정한다)을 _____ 가 아닌 언어로 적을 수 없다.

작성하지

- step 3) +30B X
- +30A X
- +30B O
- +3A -

④ 분리출원은 새로운 _____출원, _____출원 또는 「실용신안법」 제10조에 따른 _____출원의 기초가 될 수 없다. : **개별발, 개별리, 개별경**



쪽지시험 9회차 제67조의2 / 3. 그 특허출원이 분리출원인 경우

✓
 분리: 외.임, 개, 제, 제, 제
 3의 명, 분, 변, 분, 경
 의 서, 리, 의, 리, 의

쪽지시험 9회차 제59조

③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 분할출원, 분리출원 또는 변경출원에 관하여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도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출원을 한 날, 분할출원을 한 날, _____출원을 한 날 또는 변경출원을 한 날부터 각각 **+30A** 이내에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쪽지시험 9회차 변경출원 / 제53조 (기간, 중복특허 우려, 자동우주) / 기본서 p.179

쪽지시험 10회차 심사청구 순위 등 우선심사